



소통하는 의정
공감받는 의회

제3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(제1차 교육위원회)
2019. 7. 10. (수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

교육위원회
수석전문위원 최경분

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김 영 주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: 2019년 7월 1일

○ 회부일자: 2019년 7월 3일

3. 제정이유

- 충청북도교육청과 산하기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경우 충청북도 내 사회적경제기업 생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충청북도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가. 용어 정의(안 제2조)

나. 교육감의 책무(안 제3조)

다. 적용대상(안 제4조)

라.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계획 수립·시행(안 제5조)

마. 구매실적 관리(안 제6조)

바. 구매지침(안 제7조)

사. 우선구매 및 구매촉진 권장(안 제8조 ~ 안 제9조)

아. 담당 공무원 교육 등(안 제10조)

자.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 포상(안 제11조)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이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도록 촉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
- 안 제2조에서는 ‘사회적경제기업’ 등 용어를 정의하고, 안 제3조에서는 충청북도교육감으로 하여금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이용에 노력하도록 하였음
- 안 제4조에서는 적용대상을 충청북도교육청과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, 교육지원청 소속기관, 공립유치원, 공립 각급학교로 정하였음
-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매년 ‘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계획’을 수립하여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하고,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며,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지침을 수립하도록 하였음
- 안 제8조에서는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고, 안 제9조에는 교육감이 사립학교 장에게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음
- 안 제10조에서는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, 안 제11조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기여한 기관이나 개인을 교육감이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음
- 본 조례안은 전체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바람직한 취지를 담고 있고,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점에 비추어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됨